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9. 3 선고 2023가단1146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만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

변 론 종 결 2024. 6. 18.

판 결 선 고 2024. 9. 3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3. 3. 29.자로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5,334,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C 주식회사(이하 'C'이라 한다)에 대한 채권자로서,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3. 3. 29. 제3채무자인 D가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탁금을 출급하도록 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출급한 공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오히려 잠실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, 2019. 12. 31.부터 2022. 12. 31.까지 사이에 C이 신고한 자산 총계가 부채 총계에 미달되는 상태였던 적은 없는 사실, 위 채권양도 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22. 12. 31. 현재 C이 신고한 자산 총계는 1,073,625,852원, 부채총계는 911,131,64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 따라서 위 채권양도 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또한, 갑 제3호증, 을 제1 내지 3, 5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C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이고, E은 위 현장에서 금속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인 사실, 피고는 종전에 E에게 대여한 돈 대신 위와 같이 E이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, 피고와 E은 C의 발주자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, D가 가압류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공탁하자 C은 위 석재공사와 금속공사 대금의 지급에 같음하여 피고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판사 김진영